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가단74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5. 25

판결 선고 2020.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3. 10월경 D과,D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석유 대금채권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금액 2억 5,000만 원,보험기간 2013. 10.17.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D의 채무 중1억 원 부분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E는 2015 . 8월경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 고,원고는 2015. 10. 29. E에 248,137,6이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금액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금융위원회가 연대보증폐지방안을 2013. 7. 1.부터 시행하였으므로,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단순히그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조상민